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!

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
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

- (지원대상)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20% 미만(소아청소년 130% 미만) 건강보험 가입자
- (수행기관)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/ 국민건강보험공단

<'24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>

1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

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(1,189개 → 1,272개)
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

2 특수식 지원 대상질환 확대

탄수화물 대사 질환인 당원병 환자를 위해 혈당 관리에 필요한 옥수수전분 구입비 지원

지원 항목		지원 금액	지원 대상질환
기존	특수조제분유	연간 360만 원 이내	고전적 페닐케톤뇨증(E70.0) 등 28개 질환
	저단백 즉석밥	연간 168만 원 이내	
신설('24~)	옥수수전분	연간 168만 원 이내	글리코젠축적병(E74.0) 등 9개 질환

3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 완화

의료비 지원 수급자 탈락 최소화 및 사각지대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

- 재산 산정 지역구분 개선 : 3급지 → 4급지
- 재산기준액 최대 2.5억 상향

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
'희귀질환 헬프라인' 누리집(helpline.kdca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